노인학대 사례 도움 과정

신고
1577-1389 또는 129로
전화 (24시간 상담)

접수
학대 관련 피해노인 이름,
주소, 연락처, 학대상황 파악

현장방문조사
학대피해노인을 만나
구체적인 상황과 정보수집

학대사례판정
노인학대 여부 판정
및 서비스 계획

서비스 제공
상담, 법률, 의료,
쉼터입소 등

평가 및 종결
학대피해노인
안전 확인 후 종결

사후관리
종결 이후 지속적 관심으로
노인학대 재발 방지

노인학대 신고전화 노래

(밀양아리랑 개사)

"따뜻한 돌봄 캠페인"

섬기고 사랑합니다

동참해 주세요!

1. 상호 존중
직원과 어르신(보호자) 간 서로 존중하고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.

2. 성희롱 금지
직원과 어르신(보호자) 간 성희롱을 하지 않습니다.

3. 폭언, 폭행 금지
직원과 어르신(보호자) 간 폭언 및 폭행을 하지 않습니다.

고용노동부 1350 / 국가인권위원회 1331 / 노인학대신고 1577-1389

보건복지부

모든 세대가 함께 웃을 때 세상은 더 따뜻해집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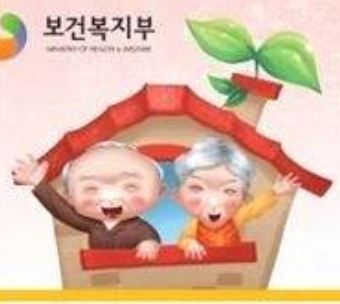

우리는 학대노인 지킴이!

알기 쉬운 노인학대 유형

신체적 학대
신체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예) 설명할 수 없거나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.

정서적 학대
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
예) 소외시키거나 말 · 행동을 통해 무시하고 욕을 한다.

성적 학대
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
예) 성적 수치심을 주는 농담을 하거나 몸을 만진다.

경제적 학대
노인의 의사에 반(反)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
예) 허락 없이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가로채거나 사용한다.

방임
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
예) 조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적 처치 등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.

유기
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예)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 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.

24시간

노인학대 신고·상담전화 1577-1389

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노인보호전문기관

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(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).